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2월 17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8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원안)

2. 제안설명의 요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에서의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군감염병환자등¹⁾, 군감염병의심자²⁾, 군보건의료인, 의약품, 장비 및 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항 신설).

또한, 개정안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자료·다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연계·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는 것임.

1) “군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인 군인등을 말한다.(안 제2조제5호 신설)

2) “군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인 군인등을 말한다.(안 제2조제6호 신설)

첫째, 국방부장관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법에서 명시한 필요한 자료³⁾를 수집·관리·보유·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2항 신설).

둘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다른 정보시스템⁴⁾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함(안 제12조의2 제3항 신설).

셋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4항 신설).

-
- 3) 1.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3.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의 감염병에 대한 치료내용 및 예방접종 내용
4.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2조의2(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①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군감염병환자등, 군감염병의심자, 군보건의료인, 의약품, 장비 및 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3.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의 감염병에 대한 치료내용 및 예방접종 내용 4.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현행	개정안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종 감염병 발생 유행주기 감소⁵⁾ 및 피해 규모 확대 추세와 3밀 환경(밀집, 밀폐, 밀접) 등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은 감염병 위협에 취약한 상태임.

2019~2022년 군은 코로나 재난 상황 시 확진자 통계, 격리 현황 등의 업무를 메일, 문자 등 수기 작업으로 수행함에 따라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예방 대책 마련, 자산의 적시적소 투입 등의 업무에 애로사항을 겪은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군에서의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5) * ('02) 사스 → ('09) 신종인플루엔자 → ('15) 메르스 → ('19) 코로나19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동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개정안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예방 대책 마련 및 자원의 적시 적소 투입을 통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동 시스템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감염 관련 질병 정보 등) 등이 수집·관리·보유·처리되고 타 부처 소관의 여러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되며, 퇴역한 군인 또는 퇴직한 군무원 등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계속 보유될 수 있음.

특히, 국방부는 이 시스템으로 생성할 개인정보 포함 문서인 ‘역학조사서’를 질병관리청 등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를 근거로 의료기록에 준하여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다루게 될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들 역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9조에 따라 모든 의무기록을 10년 보관 후 보존매체에 저장하여 이관 및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백업자료를 반드시 생성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군인 및 군무원은 각 군에 소재한 다양한 규모의 부대에서 근무하는 지휘관, 참모, 군의관, 군간호사, 방

역대책본부 근무자, 역학조사관, 부대 시설담당자, 부대 군수담당자 및 수송 담당자 등 광범위하므로, 이 시스템에서 보유·관리되는 개인정보 등이 시스템 구축·운영의 목적 외로 유출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음.

□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되는 검역정보시스템⁶⁾에 관한 근거규정인 「검역법」 제29조의2 제4항은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의 목적 외로 정보를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와 같이 목적 외의 정보 활용 금지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6) 개정안 제12조2제2항 제3호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개정안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음.

[붙임]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인 군인등을 말한다.

6. “군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인 군인등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감염병”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①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군감염병환자등, 군감염병의심자, 군보건의료인, 의약품, 장비 및 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3.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의 감염병에 대한 치료내용 및 예방접종 내역
4.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 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⑤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 <u>군감염병환자등</u> ”이란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u>감염병환자</u> , <u>감염병의사환자</u> 또는 <u>병원체보유자인 군인등</u> 을 말한다.
<신설>	6. “ <u>군감염병의심자</u> ”란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5호의2의 <u>감염병의심자인 군인등</u> 을 말한다.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는 군에서의 <u>감염병</u>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 <u>감염병</u>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u>감염병</u> 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	③ ----- ----- ----- -----

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하여야 하며, 공유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신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2항 -----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

템) ①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군감염병환자등, 군감염병의심자, 군보건의료인, 의약품, 장비 및 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

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 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3.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 심자의 감염병에 대한 치료내용 및 예방접종 내역

4.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

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